

#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36호)

## 심사보고서

1997. 10.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9. 2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9. 2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10. 9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 : 고성군 보건소는 현재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 개선하려함.

나. 주요골자 :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전에는 입원서약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예납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존치해 오던것을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(현행 제1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보건소는 현재 입원병실이 없으며, 이후에도 입원병실 운영계획이 없어 입원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 함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관련 법규를 정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5. 토 론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○ 1997. 10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